◉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-0116호
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을(를)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'행정절차법'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4월 02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도서 구입, 공연 관람, 박물관 · 미술관 입장, 신문 구독 등에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 · 신문 · 공연 · 박물관 · 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(이하 "문화비 소득공제"라 함)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「문화기본법」제11조제3항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「문화예술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17585호, 2020. 12. 8. 공포, 20 21. 6. 9. 시행)됨. 이에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하는 등 원활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의 신설)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국문화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종류를 구체화함(안 제38조제1항 제1 호에서 제5호)
- 나.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의 접수 · 등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(안 제28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.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,단체의 경우 기관,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,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
- 전자우편 : twoskyape@korea.kr

- 팩스 : 044-203-3469
 4. 그 밖의 사항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(<u>www.mcst.go.kr</u>) 자료공간-법령자료-입법예
고를 참조하시거나, 문화정책과(전화 044-203-2512, 2514, 팩스 044-203-34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.